

## 「중구 희망근로 지원사업(4차)」 참여자 모집 공고

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「중구 희망근로 지원사업(4차)」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.

2021년 9월 3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### 1. 모집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- 사업명칭 : 중구 희망근로 지원사업(4차)
- 사업기간 : 2021. 10 .4.(월) ~ 2021. 12. 20.(월) ※ 사업별로 상이
- 신청기간 : 2021. 9. 6.(월) ~ 2021. 9. 8.(수) 09:00~18:00 (3일간)
- 신청방법 : 주민등록 주소지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- 모집인원 : 128명
- 사업내역 : 공공시설 방역 및 공공업무 지원
  - ※ 상세내역 붙임 사업계획서 참조
- 근로조건
  - 근무시간 : (평일 사업) 주 5일 근무 1일 5시간 이내  
(주말 사업) 주 2일 근무 1일 7시간(10:00~18:00)
  - 보수조건 : 시급 8,720원 식비 5,000원 별도, 4대보험 가입 등
    - ※ 급여는 매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월급으로 지급하되, 미사용 연차수당은 계약종료 후 정산 지급
  -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, 근무지 등 : 붙임 계획서 참조

## 2. 신청자격

-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(2003.9.3.이전 출생) 근로능력이 있는 “중구민” 으로, 취업취약계층, 코로나19로 실직·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
- 취업취약계층

### 취업취약계층

- ① 저소득층(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, 1인 가구는 120% 이하,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)
-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(구직신청일 기준) 장기실직자 (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)
-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-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⑬ ('21년 한시적용 사항) 코로나19로 실직·폐업 등을 경험한 자

※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·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, 취약계층 등으로는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·자산 기준 초과자도 선발 총점의 20% 이상 감점 후 채용 가능

- 취업취약계층 중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%를 초과하거나, 3억원 이상의 재산(토지·건축물·주택·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) 보유 가구의 구성원

### 우선선발 기준

(1순위) 취업취약계층\* 및 코로나19로 실직·폐업 등을 경험한 자\*\*

\* 소득·자산 기준초과자가 아닌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~⑫ 해당자

\*\* 실직자, 휴·폐업 자영업자, 특고·프리랜서·플랫폼 종사자

(2순위) 소득·자산 기준초과자에 포함되는 취업취약계층

※ 재공고시 반복참여자에 포함되는 취업취약계층 2순위에 포함

## ○ 참여 배제 대상

### 참여 배제 대상

-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권자, 실업급여 수급자
- ② 다른 직접일자리사업(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) 참여중인 자  
※ 다른 직접일자리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능
- ③ 접수일 이후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자
- ④ 공무원(사립학 교 교직원 포함)의 배우자 및 자녀  
\* 주민등록과 건강보험이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 허용
- ⑤ 1세대 2인 참여자(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)
- ⑥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
- ⑦ 정부 훈령·예규·지침 이상의 규정에 따른 근로능력이 없는 자
- ⑧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
- ⑨ 아동·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
  - 갱생보호대상자,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, 노숙자
 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
 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
- ⑩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관련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대상자
- ⑪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·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

## 3. 신청서 접수 및 선발일정

### ○ 신청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1. 9. 6.(월) ~ 9. 8.(수) 09:00~18:00 (3일간)
- 접수방법 : 주민등록 주소지 각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
(단체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)

### ○ 합격자 발표 : 2021. 9. 30.(목) ※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- 합격 및 탈락여부 개별 문자통보 및 구청 홈페이지 합격자 공고

## 4. 제출서류

### ○ 제출서류

#### [필수 사항]

- ㉠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: 접수처 비치
- ㉡ 구직등록필증 : 중구 일자리플러스센터(구청 별관1층) 방문·상담 후 발급
- ㉢ 주민등록등본
- ㉣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

#### [선택 사항]

#### ㉤-1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(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가점인정, 중복가점 불가)

- ▷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 제출
- ▷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: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
- ▷ 여성기장(세대주) 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상 남편 등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입증하는 서류
- ▷ 노숙인 : 관련시설(노숙인 쉼터)에서 받은 추천서 제출
- ▷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: 수용증명서 제출
- ▷ 저소득층 : 건강보험료 부과액 (행정정보 열람 확인, 자료제출 불필요)
- ▷ 6개월 이상 실직자 : 행정정보 열람 확인, 자료제출 불필요
- ▷ 결혼이민자 : (국적 취득 전의 경우) 외국인 등록증 (국적 취득 후)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
- ▷ 그 외 : 북한이탈주민(등록확인서), 성매매피해자(쉼터 또는 보호시설 확인서), 위기청소년(소년원 발급 증명서), 갱생보호대상자(보호법인 확인서) 등

#### ㉤-2 휴·폐업자, 특고·프리랜서, 무급휴직자 등 확인서류 (해당자에 한해 제출)

- 휴·폐업자 : 휴·폐업 사실 증명원 등 확인서류
- 특고·프리랜서 : 용역·위촉계약서 등 (명칭불문) 확인서류
- 무급휴직자 : 사업주 확인 등 현재 휴직 사실 확인서류

## 5. 기타(유의)사항

- 사업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하신 신청서 등 일체 실물 서류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
  - ※ 문의 중구청 도심산업과(☎3396-5684)
- 가점사항은 증명서 등 서류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선발 후에 각종 신청서 및 증명서 등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참여 부적합 및 배제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참여자(중도)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 할 경우 대기자 중 차순위자 순으로 최종선발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본 공고문(채용 일정)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별도 안내합니다.
- 본 사업 참여에 따라 소득 발생 등의 사유로 복지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, 신청자는 관련 내용을 사전확인 후 응시하기 바랍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산업과 (☎3396-568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